

교 육 일 지

결 재	감독(감리)원
	김기수

교 육 일 시	2017년 01월 16일 월요일	교 육 인 원	대	상	참	석	불	참
	15:30 ~ 16:30							
강 사	신호팀 김기수		1	명	1	명	명	
장 소	신호팀 사무실	불 참 사유						
제 목	안전교육 『5호선 방화기지 등 8개소 선로전환기 교체(개량)공사』		불 참 자 전파교육일					
교 육 내 용	공사 부조리근절, 안전교육							

■ 공사 부조리근절

- 개 요 : 잔존부조리를 척결하고 공사에 대한 시민의 신뢰구축과 부조리 없는 깨끗한 도시철도공사 구현
- 잔존부조리 척결로 투명하고 깨끗한 공사구현에 공동노력
 - 관계 직원에게 금품(향응)을 제공하지 말 것
 - 업무와 무관한 격려성 금품이라도 제공하지 말 것
 - 클린신고센터(감사실) 운영 중
 - 공사 부조리가 있을 경우 특별감사를 실시하게 됨
- 금품제공업체에 대한 제재
 - 공사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직원에게 대가성 있는 금품을 제공한 업체는 1개월 이상 1년 미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(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)
 - 앞으로 금품 제공업체는 모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조치
- 공사 적격 심사시 감점근거 마련
 - 현행
 - 적격심사시 입찰서류를 위조, 변조 또는 허위 작성하는 경우에는 감점(5~10점) 규정이 있으나 공사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업체에 대한 감점기준 및 공사 수주시에도 불이익이 없는 실정임
 - 감점근거 마련
 - 관행적인 금품수수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금품을 제공한 업체는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는 기준 마련
 -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기준 근거 : 행정자치부 예규 제39호
 - 서울시 지침으로 적격심사기준에 감점(5~10점)근거를 마련 시행조치

< 뒷면계속 >

■ 안전교육

-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에 필요한 안전수칙을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시설물에는 필요한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. => 승강장 전/후부에 빨강색 경고등 설치
- 본 수칙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안전유지를 위하여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현장대리인, 현장소장, 안전관리자는 작업원이나 공중의 안전에 대하여 보호책임이 있으므로 충분한 보호,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안전관리자 및 현장소장은 작업 전에 반드시 일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현장대리인은 공사 중 현장에 상주하여 작업원을 지휘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.
- 안전관리자는 현장을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화재, 도난방지 등에 유의하고 감독자에게 이상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.
- 작업 후 작업시 사용한 자재를 깨끗이 정리하여 고객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- 현장요원은 작업장내 위해개소 발견 시 즉시 현장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.
- 작업용 안전보호구(안전화, 안전모 등)는 반드시 착용하고, 작업공구는 정확히 갖추어 있는지 확인하고 작업에 임한다.
- 높은 곳에서 작업 시는 항상 조심을 하여야 하며, 안전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또한, 자재를 절대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한다.
- 사다리작업 및 앙카 작업시 낙하사고 등 신체상해에 주의하고 동료의 안전에도 각별히 주의한다.
- 작업중에는 음주, 흡연, 장난이나 농담을 하여서는 안 된다.
- 야간작업은 열차운행 종료 후 작업을 시작하며, 승강장 작업은 전차선 급전 이전에 대합실 작업은 영업준비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.
- 어두운 곳에서 작업할 때에는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명등 및 배선을 안전하고 견고하게 설치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, 정전에 대비하여 휴대용 전등을 확보하여야 한다.
- 전원 접속작업은 반드시 공사감독(감리)원 입회하에 작업한다.
- 자재의 보관은 시방서에 준하며, 공사 전 자재를 반입하여 보관할 때는 관련부서와 협의 후 고객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안전펜스를 설치한다.
- 작업종료 후에는 공사현장의 주변정리 및 화재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, 발생된 폐자재는 반드시 수거하여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.
- 자재의 반입 및 반출은 역사에 설치된 승강설비 이용은 불가하며, 반드시 계단을 이용하여 한다.

현장대리인					
신호철					